

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FAQ

- 목 차 -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 관련 사항 | 1 |
| II.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및 홍보 관련 사항 .. | 9 |
| III. 보험금 이자 관련 사항 | 12 |
| IV. 보험금 청구/지급 관련 사항 | 16 |

2017. 12.

1.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 관련 사항

1. '숨은 보험금' 이란 무엇인가요?

-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·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, 중도보험금, 만기보험금,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됩니다.

2. '숨은 보험금' 이 발생하는 원인은?

-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
 -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^①,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^②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.
 - ①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전 등에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, 주소불명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
 - ② 약관상 제공되는 이자(금리)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고,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등 보험금을 찾아가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, 보험금을 찾지 않으면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찾아가지 않는 사례

3. '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' 구축 목적은 무엇인가요?

-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언제든 손쉽게 한 번에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(상시관리시스템)

4.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한 보험금의 범위는 ?

□ '중도보험금, 만기보험금, 휴면보험금'과 '생존연금'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- ① 중도보험금 :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가 되고,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자금, 축하금, 자녀교육자금, 자립자금, 생활자금, 여행자금, 배당금, 사고분할보험금 등이 있습니다.

※ (참고) 중도보험금의 주요 유형별 개념

- 축하금 : 자녀출생, 초등학교 입학 등의 사유 발생시 지급
- 자녀교육자금 : 자녀 대학 입학시 등록금/학자금(정액) 지원 목적으로 지급
- 자립자금 : 성년(예: 만20세) 등 일정 시점에 지급
- 건강진단자금 : 일정한 나이(예 : 60세) 도달시 건강진단지원을 위해 지급
- 생활·여행자금 : 생활비 또는 여행 목적으로 주기적으로(예 : 5년, 10년 마다)으로 지급되는 보험금
- 배당금 : 보험사가 자산운용 등을 통해 얻은 추가 수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보험금(유배당보험 계약에서만 발생)
- 사고분할보험금 : 장해, 진단, 사망 등 사고 관련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/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장해연금, 유족연금, 진단연금 등이 있으며, 계좌불명 등으로 지급이 중단되면 숨은보험금이 발생함

- ② 만기보험금 :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('15.3월 이전 소멸시효 : 2년, '15.3월 이후 소멸시효 : 3년)의 보험금을 말합니다. [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으로 전환됨]

- ③ 휴면보험금 : 보험계약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('15.3월 이전 2년)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을 말합니다.

※ (참고) 생존연금도 조회가 가능한지 ?

- 생존연금이란 연금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연금을 말하며, 기존에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였습니다.
- 금번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숨은보험금과 함께 찾아가지 않은 생존연금도 한꺼번에 조회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다만, 연금보험상품(연금저축 포함) 또는 연금전환특약 등을 통해 이미 지급시기가 도래한 보험금 규모만 조회가 가능하며, 예상 연금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하여는 통합연금포털 방문이 필요합니다.

5. 보험사고 발생으로 청구가 된 보험금도 조회가 되나요?

- 동 시스템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보험금을 조회하는 목적으로 구축되어 있어,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지급절차가 진행중인 사고 보험금*은 조회되지 않습니다.

* 예시 : 자동차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지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, 병원 방문 후 실손의료보험의 진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

6. 기존 시스템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
- 기존에는 휴면보험금 조회 시스템만 있었으나,
 - 금번 ‘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’은 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중도보험금, 만기보험금, 배당금 등 청구되지 않고 있는 모든 미청구보험금까지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7.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은 ?

- 홈페이지 주소(<http://cont.insure.or.kr>)로 직접 접속하시거나,
 - 인터넷 포털(Naver, Daum)에서 ‘내보험 찾아줌’, ‘숨은 보험금’ 등을 검색하여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.

* Naver, Daum의 시스템 작업 시간 등으로 늦어도 12.19일부터 인터넷 포털 검색을 통한 통합 시스템 접속 가능

-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.

8. 휴대폰에서도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지 ?

- 휴대폰을 통해서도 당연히 접속이 가능합니다.
 - 홈페이지 주소(<http://cont.insure.or.kr>)로 직접 접속하시거나, Naver, Daum 등 인터넷 포털 앱에서 ‘숨은 보험금’, ‘숨은 보험금 조회’, ‘숨은보험금 찾기’ 등을 검색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.

9. 통합조회시스템은 야간에도 조회할 수 있는지 ?

-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은 365일,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.

10.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할 때 별도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 ?

- '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'을 통해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려면 주민등록번호, 이름, 휴대전화(본인명의) 등을 입력하고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 - 휴대폰인증, 공인인증서인증, 아이핀인증 중에 하나의 방법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.

11. 통합조회시스템이 있는지 모르면 숨은 보험금 조회를 할 수 없는데, 이러한 분들을 위한 방법은 ?

- 고령층 등 통합조회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분, 통합조회시스템을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
 - 각 보험회사는 12.19일부터 숨은 보험금 청구권자분들의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.
 - *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모든 계약건이 조회가 가능하나, 안내우편 발송은 보험금 1만원 이상인 계약건에 대해 실시
- 아울러, 가까운 은행 지점에도 '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'에 관한 안내자료가 비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* 은행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개별 은행의 지점에 통합조회시스템 안내자료가 비치되도록 하였습니다.
 - 보험대리점 협회에도 보험대리점·설계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계약의 계약자분들께도 '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'이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.

12.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?

□ 각 보험회사에 유선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,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지역본부/지부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다만, 방문가능한 협회 지역본부/지부 사무실이 주요 대도시에도 있고, 조회시간도 제한되어 있어 일부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.

※ 방문조회 운영시간 및 구비서류

- 방문조회 시간 : 오전 09:00 ~ 11:30, 오후 13:00 ~ 17:30(토/일/공휴일 제외)
- 방문시 구비서류
 - 본인 : 신분증
 - 대리인 : 조회신청자의 위임장(인감도장 날인),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

◆ 생명보험협회

| 지역 | 주 소 | 연락처 |
|----|---|--------------|
| 서울 |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, 7층 (연지동,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신관) | 02)2262-6570 |
| 부산 |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0 8층 (범천동, ABL생명빌딩) | 051)638-7801 |
| 대구 |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, 11층(남산동, ABL생명빌딩) | 053)427-8051 |
| 광주 | 광주시 서구 천변좌로 268, 7층 (양2동, KDB생명빌딩) | 062)350-0114 |
| 대전 |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55, 14층 (둔산동, 삼성생명빌딩) | 042)242-7002 |
| 원주 |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2, 5층(인동, 삼성생명빌딩) | 033)761-9672 |

◆ 손해보험협회

| 지역 | 주 소 | 연락처 |
|----|--|----------------|
| 서울 |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. 6층 (수송동, 코리안리빌딩) | 02)3702-8500 |
| 수원 |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5. 9층 (인계동, 삼성화재 수원사옥) | 031)238-4242 |
| 부산 | 부산시 동구 자성로 133번길 15, 9층(범일동, KB손해보험빌딩) | 051)469-6216~7 |
| 대구 |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. 5층 (범어동, KB손해보험빌딩) | 053)741-1731 |
| 광주 | 광주시 서구 시청로 30. 6층 (치평동, 삼성화재빌딩) | 062)226-0301 |
| 대전 | 대전시 중구 보문로 268. 9층 (대흥동, KB손해보험빌딩) | 042)254-6921~2 |

※ (제주) 생명·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 지원센터 : 제주시 전농로 118 교보생명빌딩 4층(064-759-9938)

13.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일부 보험사의 보험금정보가 미회신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법은?

- 일시적으로 일부 보험사의 보험금 정보가 미회신될 경우에는
 - 미회신되는 건들을 일괄적으로 야간에 처리하여 다음날(D+1) 오전 9시 경에 핸드폰 문자(SMS)*로 '조회가능 여부'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

* SMS문구 : 귀하의 미회신에 대한 오류가 복구되었습니다. 홈페이지(cont.insure.or.kr)에서 재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
- 그 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간(09:00~18:00)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.

※ 생명·손해보험 협회 연락처(09:00~18:00 중 시스템 장애 문의)

- 생명보험협회 : (02) 2262 - 6570
- 손해보험협회 : (02) 3702 - 8500

14. 우체국이나 신한 등 보험상품도 조회되나요?

-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25개 생명보험회사, 16개 손해보험회사 등 총 41개 민간 보험회사의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 - 다만, 우체국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 등 공제상품의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
15. 숨은보험금 조회는 피보험자도 가능한가요?

- 보험금 조회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제공하는 사항으로, 피보험자 자격만으로는 보험금 조회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.

16. 보험수익자가 여러명인 경우, 모두가 숨은보험금 조회가 가능한가요?

- 보험수익자가 공동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공동수익자 중 한명이라면 숨은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보험수익자별로 지급받는 금액이 아닌 전체 수익자의 총 수령가능 보험금으로 조회되니, 실제로 본인이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조회된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.
- 보험수익자의 경우, 보험금 지급사유별로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, 해당 보험회사에 최종 수령가능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17. 압류중인 보험금도 조회가 되는 건가요?

- 압류나 지급정지 등이 되지 않은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만 조회가 가능합니다.
- 다만, 압류 등이 해제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조회 가능합니다.

18. 해지환급금도 조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?

-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보험금을 조회하는 목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해지환급금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.
- 해지환급금은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 문의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19. 실제 조회된 보험금은 그대로 수령이 가능한가요?

조회된 보험금은 전월말 기준으로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.

※ 예시: '17.12.19일 조회한 숨은보험금은 '17.11월말 기준으로 보험금(원금)과 이자

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며, 보험계약대출원리금, 세금, 이자지급일 차이 등이 존재할 경우 조회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
20. 신용정보원에서 운영중인 '내보험 다보여'와 유사한 것 아닌지?

'내보험 다보여'는 기존 가입된 보험가입내역 및 보장별 내역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보험금 정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.

2.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및 홍보 관련 사항

21.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에는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요 ?

□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 外,

-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통해 보험회사의 숨은 보험금 및 사망보험금이 발생한 계약자 또는 청구권자 분들에게 우편을 발송하였고,

*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모든 계약건이 조회가 가능하나, 안내우편 발송은 보험금 1만원 이상인 계약건에 대해 실시

※ 생·손보험회는 약 7,400만건(중복건 제외)의 보험계약 관련 정보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인 받았음

- 아울러, 각 은행지점에 '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'에 관한 안내 자료를 비치하여 다수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,(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에 협조 요청)
- 보험대리점, 보험설계사도 보험계약자분들이 문의하시면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(보험대리점협회에 협조 요청)

22. 안내 우편은 언제쯤 도착할 수 있는지 ?

□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통해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한 최신 주소를 확인하여, 12.19일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안내문이 발송됩니다.

-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안내 우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□ 다만, 우편발송 건수가 워낙 많아 우편발송/수령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

**23. 금번에 추진하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은
기존에 하던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?**

기존에는 휴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만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.

*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: '03년부터 추진,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'12년부터 추진

그러나, 금번 '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'은

- 휴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외에도, 중도보험금, 만기보험금 등 소비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모든 보험금에 대한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.

**24. 찾아주기 운동 대상종 하나인 사망보험금도 통합조회시스템
조회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?**

사망보험금은 일반, 재해, 상해 등 사망 사고의 발생유형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사망여부만으로는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, 통합조회시스템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.

-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은 지급여부, 지급규모가 확정된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.

그 대신, 상속인, 보험수익자 분들이 사망보험금 발생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도록

-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,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으신 분들께 최신 주소로 보험금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우편을 12.19일부터 발송하였습니다.

25. 우편물이 발송되는 대상은 누구인지?

- 계약자, 수익자 등 보험계약별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① 휴면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으로 계약의 원권리자인 계약자의 최신 주소로 안내하고,
- ② 미청구보험금은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최신주소로 안내하며,
- ③ 사망보험금은 1차적으로 보험금청구권자(지정된 보험수익자)에게 안내하되,
 -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수익자 미지정시)에게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.

26.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은 이번에만 시행하는 일회성 이벤트인지?

-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은 향후에도 주기적(매년)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특히,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은 365일,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니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수시로 조회하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

3. 보험금 이자 관련 사항

27. 숨은 보험금은 모두 동일하게 계속 이자 부리가 되나요?

-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은 계약체결 시점, 만기시점, 만기도래 이후 경과기간 등에 따라 상품약관에서 정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.
- 한편,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

< (참고) 숨은보험금 이자가 지급되는 구조(생명보험 표준약관 기준) >

| 유형 | 이자부리 기간 | 이자율 | |
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---|
| | | '01.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 | '01.3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 |
| 중도 보험금 |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계약만기 이후 3년*간 * 만기가 '15.3월 이전인 계약은 2년 | 계약시점의 예정이율 + 1% | ▪지급사유발생일~만기 : 예정·공시이율 ▪만기일부터 1년간 : 예정·공시이율 50% ▪만기일부터 1년 경과후 2년간 : 고정금리 1% |
| 만기 보험금 | 계약만기 이후 3년*간 * 만기가 '15.3월 이전인 계약은 2년 | 계약시점의 예정이율 + 1% | ▪만기일부터 1년간 : 예정·공시이율 50% ▪만기일부터 1년 경과후 2년간 : 고정금리 1% |
| 휴면 보험금 | 이자 없음 | | |

* 일부 상품의 경우 약관에 따라 이자가 제공되는 구조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

< (참고) 숨은보험금 이자가 지급되는 구조(손해보험 표준약관 기준) >

| 유형 | 이자부리 기간 | 이자율 | | |
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| | '00.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 | '00.4월부터 '01.3월까지 체결된 계약 | '01.4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 |
| 중도 보험금 |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계약만기 이후 3년*간 * 만기가 '15.3월 이전인 계약은 2년 | 계약시점의 예정이율 + 0.5% | 계약시점의 예정이율 + 1% | ▪지급사유발생일~만기 : 예정공시이율 ▪만기일부터 1년간 : 예정공시이율 50% ▪만기일부터 1년 경과후 2년간 : 고정금리 1% |
| 만기 보험금 | 계약만기 이후 3년*간 * 만기가 '15.3월 이전인 계약은 2년 | 계약시점의 예정이율 + 0.5% | 계약시점의 예정이율 + 1% | ▪만기일부터 1년간 : 예정공시이율 50% ▪만기일부터 1년 경과후 2년~ : 고정금리 1% |
| 휴면 보험금 | 이자 없음 | | | |

* 일부 상품의 경우 약관에 따라 이자가 제공되는 구조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

28. 중도보험금은 어떤 경우에 찾아가는 것이 유리한지 ?

* 중도보험금 :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,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보험금

□ 보험가입 시점, 이자율 구조, 만기도래일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른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바로 찾아가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.

* 다만, 구체적인 유/불리 판단은 보험계약의 약관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※ 중도보험금의 이자 제공 관련 예시 (생명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가입시기, 예정이율 등을 가정하여 제시)

['01.3월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]

◎ 예시1('01.3월 이전 계약, 소멸시효 완성 전 계약)

- 계약일자 : '00.8월 (예정이율 7.5%가정)
- 건강진단자금(중도보험금) : 100만원, 지급사유 발생일 '15.8월

(부리이율) ➔ '15.8월(지급사유 발생일) ~ 소멸시효 완성일 : 8.5%(예정이율 + 1%)

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찾아가지 않아도 8.5%의 이자 제공

['01.3월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]

◎ 예시1('01.3월 이후 계약, 만기 전 계약)

- 계약일자 : '02.8월 (예정이율 6.0%가정)
- 교육자금(중도보험금) : 100만원, 지급사유 발생일 '15.8월
- 계약만기 : '20.8월

(부리이율) ➔ '15.8월(지급사유 발생일) ~ '20.8월(만기일) : 6.0%(예정이율)
'20.8월(만기일) ~ '21.8월(만기일 이후 1년) : 3.0%(예정이율의 50%)
'21.8월(만기일 이후 1년) ~ 소멸시효완성일 : 1%(고정금리 1%)
소멸시효 완성 이후 : 이자가 제공되지 않음

∴ 과거에 체결된 만기 미도래 중도보험금은 만기일까지 6.0%의 이자 제공

◎ 예시2('01.3월 이후 계약, 최근에 체결한 계약)

- 계약일자 : '16.2월 (평균공시이율 2.8% 변동없는 것을 가정)
- 교육자금(중도보험금) : 100만원, 지급사유 발생일 '17.3월
- 계약만기 : '26.2월

(부리이율) ➔ '17.3월(지급사유 발생일) ~ '26.2월(만기일) : 2.8%(평균공시이율)
'26.2월(만기일) ~ '27.2월(만기일 이후 1년) : 1.4%(평균공시이율의 50%)
'27.2월(만기일 이후 1년) ~ 소멸시효완성일 : 1%(고정금리 1%)
소멸시효 완성 이후 : 이자가 제공되지 않음

∴ 최근에 체결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중도보험금은 이자율을 보고 선택

29. 만기보험금은 어떤 경우에 찾아가는 것이 유리한지?

* 만기보험금 : 보험계약의 만기가 경과한 보험금

- '01.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'예정이율+1%'의 이자가 제공되고,
- '01.3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'예정이율 등의 50%' 또는 '고정금리 1%'의 이자가 제공되는 점 등을 확인하시고,
- 바로 찾아가는 여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.

※ 만기보험금의 이자 제공 관련 예시

(생명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가입시기, 예정이율 등을 가정하여 제시)

['01.3월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]

◎ 예시1('01.3월 이전 계약, 소멸시효 완성 전 계약)

- 계약일자 : '00.8월 (예정이율 7.5%가정)
- 만기보험금 : 100만원, 계약만기 : '15.8월

(부리이율) → '15.8월(만기일) ~ 소멸시효 완성일 : 8.5%(예정이율 + 1%)
소멸시효 완성일 이후 : 이자 부리 없음

∴ 오래전에 체결된 계약은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8.5%의 이자 제공

['01.3월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]

◎ 예시1('01.3월 이후 계약, 만기후 1년 이내 계약)

- 계약일자 : '02.8월 (예정이율 5.0%가정)
- 만기보험금 : 100만원
- 계약만기 : '17.8월

(부리이율) → '17.8월(만기일) ~ '18.8월(만기일 이후 1년) : 2.5%(예정이율의 50%)
'18.8월(만기일 이후 1년) ~ 소멸시효완성일 : 1%(고정금리 1%)
소멸시효 완성일 이후 : 이자 부리 없음

∴ 비교적 이자율이 높지 않아 소비자가 판단 ('17.10월 예금금리는 1.5~2%내외)

◎ 예시2('01.3월 이후 계약, 만기도래 이후 1년초과 & 소멸시효 완성전)

- 계약일자 : '06.10월 (예정이율 4.0%가정)
- 만기보험금(중도보험금이 만기도래) : 100만원, 지급사유 발생일 '15.8월
- 계약만기 : '16.10월

(부리이율) → '16.10월(만기일) ~ '17.10월(만기일 이후 1년) : 2.0%(예정이율의 50%)
'17.10월(만기일 이후 1년) ~ 소멸시효완성일 : 1%(고정금리 1%)
'소멸시효 완성일 이후 : 이자 부리 없음

∴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완성 전까지 1.0%의 이자율만 적용

30. 휴면보험금은 어떤 경우에 찾아가는 것이 유리한지?

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.

31. 숨은 보험금의 금리구조를 직접 조회할 수는 없는지 ?

보험상품별로 이자 제공 구조 등이 상이한 만큼, 일률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.

○ 따라서, 각 보험회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정확한 이자 제공 구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

4. 보험금 청구/지급 관련 사항

32. 조회한 보험금을 실제 청구하기 위한 절차는?

- 보험사별, 보험금 유형별로 청구절차 등이 상이하고, 일부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 생존여부 확인 절차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여,
 - 해당 회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청구절차,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.

※ 생명·손해보험회사 고객센터 연락처

| 생명보험사 | | 손해보험사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회사명 | 연락처 | 회사명 | 연락처 |
| 한화생명 | 1588-6363 | 메리츠화재 | 1566-7711 |
| ABL생명 | 1588-6500 | 한화손보 | 1566-8000 |
| 삼성생명 | 1588-3114 | 롯데손보 | 1588-3344 |
| 흥국생명 | 1588-2288 | MG손보 | 1588-5959 |
| 교보생명 | 1588-1001 | 흥국화재 | 1688-1688 |
| DGB생명 | 1588-4770 | 삼성화재 | 1588-5114 |
| 미래에셋생명 | 1588-0220 | 현대해상 | 1588-5656 |
| KDB생명 | 1588-4040 | 서울보증 | 1670-7000 |
| DB생명 | 1588-3131 | KB손보 | 1544-0114 |
| 동양생명 | 1577-1004 | DB손보 | 1588-0100 |
| 메트라이프생명 | 1588-9600 | 더케이손보 | 1566-3000 |
| 푸르덴셜생명 | 1588-3374 | 약사손보 | 1566-1566 |
| 신한생명 | 1588-5580 | 에이스손보 | 2127-2400 |
| PCA생명 | 1588-4300 | AIG손보 | 1544-2792 |
| 처브라이프생명 | 1599-4600 | 카디프손보 | 1544-2580 |
| ING생명 | 1588-5005 | 농협손보 | 1644-9000 |
| 하나생명 | 080-3488-7000 | | |
| KB생명 | 1588-9922 | | |
| BNP파리바카디프생명 | 1688-1118 | | |
| 현대라이프생명 | 1577-3311 | | |
| 라이나생명 | 1588-0058 | | |
| AIA생명 | 1588-9898 | | |
| NH농협생명 | 1544-4000 | | |
| IBK연금보험 | 15774117 | | |
| 교보라이프플래닛 | 1566-0999 | | |

33. 온라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없는지 ?

- 온라인 청구가 가능한 보험회사도 있고,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도 있습니다.
- '18년 중, 금융위(금감원)은 "내보험 찾아줌(ZOOM)"을 통해 간편 청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

34. 확정된 보험금인데 청구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?

- 현 시점에서는 보험회사별, 보험금 유형별로 보험금 청구절차가 상이하여 표준화 및 일원화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
-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'18년 중에 숨은 보험금 지급 절차 표준화, 청구 간소화 등을 검토·추진할 계획입니다.

35. 청구 후 지급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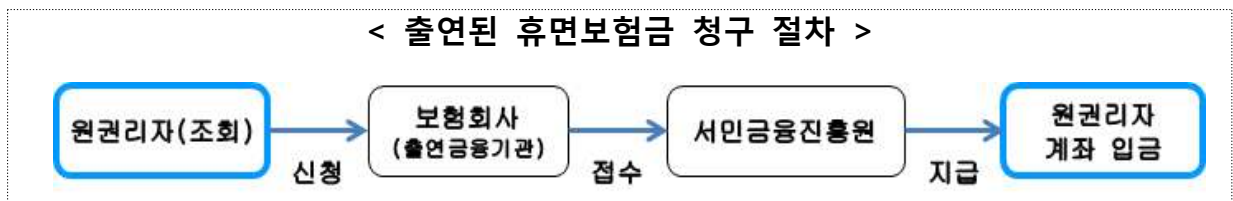
- 숨은 보험금의 경우,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을 거쳐 3영업일 이내에 지급/처리할 예정입니다.
- 다만, 시스템 오픈 초기 일시적으로 청구가 몰릴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6. 휴면보험금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재산으로 알고 있는데, 수령이 가능한가요?

-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(15.3월 이전 : 2년, 이후: 3년)이 경과하여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된 재산으로 보험회사의 법적인 지급의무는 없습니다.
- 그러나, 법적인 지급의무와 관계없이, 모든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도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.

37.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된 휴면보험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일반적으로 휴면보험금은 보험사에서 2년간 보유한 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는데,
 -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보험회사의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청구하면 지정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

38. FAQ 외의 질문을 하려면 어디로 해야 하는가?

- 생명 또는 손해보험협회로 연락하시면 궁금한 사항을 답변 드릴 예정이며, 필요시 해당 보험사와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.

※ 생명·손해보험 협회 연락처

- 생명보험협회 : (02) 2262 - 6570
- 손해보험협회 : (02) 3702 - 8500